

# 검 토 보 고 서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 
관한 조례안 **기획예산과**

( 2011. 12. 2 )

**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**

**[ 전문위원 명 금 길 ]**

## **1. 안 건 명**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 **2. 제출일자 및 제출자**

- 제출일자 : 2011년 11월 17일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**3. 의안 회부일자**

- 2011년 11월 22일

## **4. 근거법령**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,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80조

## [검토보고]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- 동 조례안은 마포의 미래성장을 위한 정책결정 및 규정 현안에 대하여 지역원로와 전문가의 건의·자문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과의 소통과 통합의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

### < 주요내용 >

- (1) 안 제2조에서는 자문단의 기능으로서 마포구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 결정에 관한 건의·자문, 구정의 장·단기 발전 계획에 관한 건의·자문,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개선에 관한 건의·자문,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건의·자문 등을 명시
- (2) 안 제3조에서는 지역원로회의와 전문가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필요시에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, 각 회의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지역원로회의는 25명 이내, 전문가회의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회의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
또한 자문단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지역원로회의의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계, 언론계, 법조계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, 전문가회의 위원은 자치행정, 복지, 경제, 관광,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함

- (3)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로서 각 회의의 위원장은 각각 회의를 대표하며 소관 회의의 직무를 총괄하되, 전체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원로회의의 위원장이 전체 회의의 의장이 되도록 함
- 또한 각 회의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
- (4) 안 제5조에서는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되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함
- (5) 안 제7조에서는 가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마다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팀장으로 하도록 함
- (6) 안 제8조에서는 각 회의의 위원장이 각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각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,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로 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
- (7) 안 제10조에서는 자문단은 건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·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함

- (8) 제11조에서는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안 제10조에 따라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
- (9) 제1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

### < 검토의견 >

- 동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에 따라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 및 전문가의 건의·자문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,
-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확보는 물론 입법 예고 및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
- 정책자문의 전문성·효율성 확보를 위해 자문단 내에 경제, 복지 문화, 교통 또는 국별 위원회 등과 같은 분야별 분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능률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됨